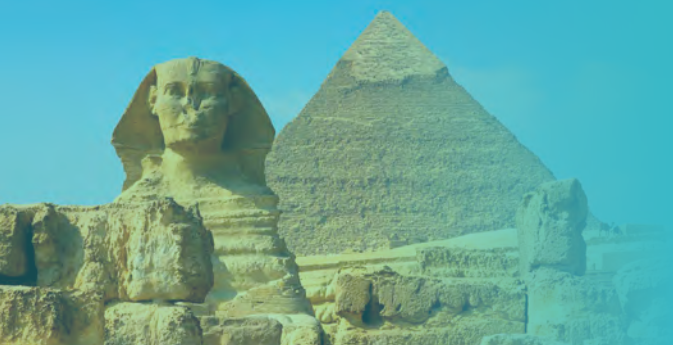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34-9761057-150017-14



“ 깨끗한 재외선거
글로벌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



재외선거 위반사례예시집

Cases on Illegal Activities of Overseas Election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 간 등 록 번 호

34-9761057-150017-14

“ 깨끗한 재외선거
글로벌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

재외선거 위반사례예시집

Cases on Illegal Activities of Overseas Election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예시집은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재외선거를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하여 현행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중 재외선거 관련 규정들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예시집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사례라도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에서 제한·금지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허용된 사례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방법·대상·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관련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시집에 의하여도 특정 행위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화(82-2-502-8475, 82-2-502-6516) 또는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예시집은 대한민국 법규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이 예시집에서 허용되는 사례인 경우에도 그 사례가 행하여진 장소를 관할하는 국가의 법규 등에 위반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재외선거제도 등을 부록으로 함께 안내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의 표기

- “후보자”는 후보자등록을 마친 자,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친 자, “입후보예정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 ⇒ “선거법 § 112①” 또는 “법 § 112①”으로 표기
- “정치자금법 제2조” ⇒ “정치자금법 § 2”로 표기
- “정당법 제2조” ⇒ “정당법 § 2”로 표기

제1장	국내와 국외에서의 선거운동 방법 차이	
	1. 국외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06
	2. 국외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원인	06
	3. 국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해도 국내와 동일하게 처벌	07
	4. 공정한 재외선거! 재외국민의 도움으로 가능	07
제2장	국외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등	
	1. 선거운동의 정의	10
	2. 재외국민이 할 수 있는 국외 선거운동 방법	13
	3. 정당·후보자만 할 수 있는 국외 선거운동 방법	14
	4. 투표참여 권유활동	14
	5. 재외국민·외국인이 선거법 위반 시 받는 불이익	15
제3장	국외에서 예상되는 주요 위반사례 예시	
	1. 사전선거운동	18
	2. 단체의 국외 선거운동	19
	3. 단체의 공명선거 추진활동	20
	4. 선거 관련 기부행위	22
	5.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5
	6. 공무원 등의 선거관련 등 행위	26
	7. 시설물·인쇄물 설치·배부	27
	8. 모임·집회 개최	28
	9. 정당활동	29
	10. 사조직·팬클럽 활동	30
	11. 재외투표	31
	12. 사이버 이용	32
	13. 전화 이용	33
	14.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34
	15. 방송·신문 이용	35
	16. 호별방문	37
	17. 정치자금 모금·기부	38
부 록	1. 재외선거제도 안내	42
	2. 정당·후보자에 관한 정보 제공	43
	-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주요 사무일정	44

Chapter
01





제1장

국내와 국외에서의 선거운동 방법 차이

1. 국외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2. 국외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원인
3. 국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해도 국내와 동일하게 처벌
4. 공정한 재외선거! 재외국민의 도움으로 가능



1. 국외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 재외국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외선거는 선거 특성상 국외에서 실시되는 만큼 국내에서 실시되는 선거와는 달리 공정성 확보에 상당한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국외에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국외에서 허용해도 큰 부작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운동 방법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국외에서는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경우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 게시,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고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상대방을 직접 만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2. 국외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원인

- 국가마다 역사적 배경이나 정치 환경이 상이하여 선거에 관한 표현의 자유 등 선거운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이를 일부 제한하거나 전면 금지하는 국가도 있음.
-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는 대한민국 국민만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이므로,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음.
- 재외국민의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을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재외선거에서도 허용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많으므로 재외국민은 국외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할 것임.

3. 국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해도 국내와 동일하게 처벌

- 재외선거 역시 국내선거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처벌조항이 그대로 적용됨. 따라서,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 또는 사업이나 학업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국민과 마찬가지로 처벌됨.
- 또한, 국외선거법의 경우에는 국내선거법의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월(도피시는 3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되는 것과 달리 그 공소시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여 국외선거법 처벌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음.

4. 공정한 재외선거! 재외국민의 도움으로 가능

- 재외선거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이루어 지는 만큼 재외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높음. 재외선거에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만연되어 재외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재외동포 사회가 분열되거나 선거 전체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재외선거가 올바르게 시행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당과 정치권은 물론, 모든 재외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함.
- 따라서, 재외국민 스스로가 공정선거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부정선거의 유혹을 뿌리쳐,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루어 온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전 세계에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재외국민 여러분의 재외선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Chapter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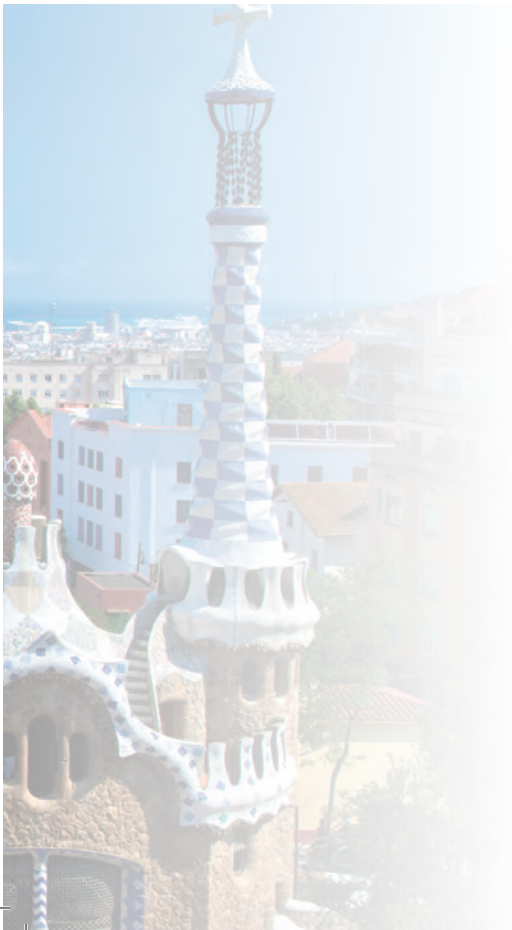




제2장

국외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등

1. 선거운동의 정의
2. 재외국민이 할 수 있는 국외 선거운동 방법
3. 정당·후보자만 할 수 있는 국외 선거운동 방법
4. 투표참여 권유활동
5. 재외국민·외국인이 선거법 위반 시 받는 불이익



1. 선거운동의 정의

가. 선거운동이란? (법 §58①)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즉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려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임.

- ▶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에만 할 수 있으며, 2016년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운동기간 등은 아래와 같음.



|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및 선거기간 |

구 분	후보자 등록기간	선거운동기간	선거기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2016. 3. 24. ~ 3. 25.	2016. 3. 31. ~ 4. 12.	2016. 3. 31. ~ 4. 13.

: 선거운동 관련 판례 :

● 선거운동의 의미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함. (대법원 2001.6.29. 판결 2001도2268)

● 선거운동의 판단기준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5. 10. 4. 판결 2005도301)

나.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법 §58①단서)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 각종 모임에서 선거에 관한 대화가 진행될 때 “인품이나 경력으로 볼 때 ○○가 되었으면 좋겠어, △△는 떨어져야 돼…” 등의 의사 표현은 선거분위기가 무르익기 시작하면 주위에서 흔히 듣는 얘기로 이러한 개인의 의견 개진은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일련의 계획 하에 하는 것이 아닌 한, 유권자가 선거에 관한 관심의 일부분을 표현하는 행위로서 대부분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또는 의사 표시에 해당

2)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을 기자회견을 통하여 외부에 공표하거나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
 - ※ 일반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정당의 공천에 관한 의견이 게재된 유인물을 배부하거나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집회·캠페인·서명운동 등 방법 불문)는 할 수 없음.

3) 통상적인 정당활동

- ▶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당의 내부활동
- ▶ 정책추진 및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한 정치활동, 정당의 당세 확장을 위한 통상적 활동, 정책의 보급·선전을 위한 활동
 - ※ 정당활동을 빙자하여 비당원인 재외국민에게 특정 선거에서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를 호소하거나 소속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이 됨.
 - ※ 정당활동 관련 할 수 있(없)는 사례 : 『제3장. 9. 정당활동』(29p 참조)

4)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 포함)하는 행위

- ▶ ‘명절 등’의 범위에 정월대보름 등 세시풍속, 연말연시, 농번기, 성년의 날, 각종 기념일 등은 포함되나, 선거구민 개인의 애경사(생일, 결혼, 장례 등), 동창회·동호회 등 개인들의 사적모임이나 행사 등은 포함되지 않음.



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법 §60)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2) 미성년자 (19세 미만인 자)
- 3) 선거일 현재 선거권이 없는 자
- 4) 대한민국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언론인
- 6)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직원
- 7) 한국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 (시·도 조직 및 구·시·군 조직을 포함)의 대표자
- 8) 선상투표 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 9) 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
 -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조합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라.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법 §218의14⑥)

- ▶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의 대표자

외국인의 국내정치 참여 관련 질의회답

- 외국인은 「정당법」 제22조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 「정치자금법」 제31조에 의하여 정치 활동을 하는 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없으며, 「선거법」 제60조제1항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2007. 2.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2. 재외국민이 할 수 있는 국외 선거운동 방법

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법 §59, §218의14①)

1)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2) 방 법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 선거일(2016. 4. 13.)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 다만, 인터넷 광고는 제외
- ▶ 선거일(2016. 4. 13.)이 아닌 때에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 이하 같음)을 전송하는 방법. 다만,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은 불가
- ▶ 선거일(2016. 4. 13.)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 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 다만,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정보통신의 방법으로는 전송할 수 없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공포 또는 비방금지(법 §250, § 251)

-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나.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법 §218의14①, §109②)

1)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2) 기 간 : 선거운동 기간 중 (2016.3.31.~ 4.12.)

3) 방 법 :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또는 말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전화 이용 선거운동 할 수 있(없)는 사례 : 『제3장. 13. 전화 이용』(33p 참조)

3. 정당·후보자만 할 수 있는 국외 선거운동 방법

가. 국내 위성방송 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 (법 §218의14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운동 기간 중 대한민국 내에 있는 국외 송출이 가능한 위성방송 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 별로 각 5회 이내의 방송광고 가능

나. 국내 위성방송 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 (법 §218의14①)

정당별로 정당의 대표자가 선임한 2명은 선거운동 기간 중 대한민국 내에 있는 국외 송출이 가능한 위성방송 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 별로 각 1회의 방송연설 가능

※ 국회의원 선거의 국외 선거운동 방법 중 방송광고·방송연설은 정당만 가능

다. 국내 인터넷 언론사를 이용한 인터넷 광고 (법 §218의14①)

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운동 기간(2016.3.31.~4.12.) 중에 인터넷 언론사를 이용하여 인터넷 광고 가능

인터넷 언론사란?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국내 관련법에 따라 신문·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 사업자 등이 운영되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함.
- 개별적인 인터넷언론사 현황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www.iendc.go.kr) 홈페이지-자료실-‘인터넷언론사 현황’ 참조

4. 투표참여 권유활동 (법 §58의2)

가.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음

나. 제한되는 투표참여 권유활동

-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
- 재외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산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



5. 재외국민·외국인이 선거법 위반 시 받는 불이익

가. 국외 선거법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등 (법 §218의30)

- 외교부장관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여권법에 따른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하거나 여권의 반납을 명함.
 - ▶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하여 조사를 종결할 수 없는 사람
 - ▶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기소중지된 사람
- 여권 발급의 제한기간 및 반납여권의 보관기간은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5년(2016. 4. 14.~2021. 4. 13.) 이내임

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외국인의 입국금지 (법 §218의31)

- 법무부장관은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되, 수사에 응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때에는 입국을 허가할 수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와 같은 입국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입국의 금지를 통보할 수 있음.
- 입국 금지기간은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2020. 5. 29.) 까지임.

Chapter
03





제3장

국외에서 예상되는 주요 위반사례 예시

1. 사전선거운동
2. 단체의 국외 선거운동
3. 단체의 공명선거 추진활동
4. 선거 관련 기부행위
5.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6.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행위
7. 시설물 · 인쇄물 설치 · 배부
8. 모임 · 집회 개최
9. 정당활동
10. 사조직 · 팬클럽 활동
11. 재외투표
12. 사이버 이용
13. 전화 이용
14.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15. 방송 · 신문 이용
16. 호별방문
17. 정치자금 모금 · 기부

1. 사전선거운동

가. 사전선거운동이란? (법 §254)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 기간에만 할 수 있음.

따라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하는 선거운동은 모두 위법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됨.

※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법 제60조의3에서 허용된 방법으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도 선거운동 기간 전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이 있음. (13p참조)

사전선거운동 금지 취지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게 되면 평소에도 경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선거가 조기에 과열될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에 지나치게 많은 경비가 소요되어 결국 돈이 많은 사람에게 유리하게 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게 되므로 후보자간의 선거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하고 선거 과열과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임.

나. 사전선거운동 성립 시기

누구든지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면 그 행위의 종료와 동시에 죄는 성립되고, 그 후의 입후보 여부와는 관련이 없음. 따라서, 사전선거운동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후에 후보등록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전선거운동이 성립됨.





사전선거운동 관련 판례

-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신이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있는 주간 지역신문에 특정인이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적격자인 것처럼 기사를 게재하여 관내 주민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와 업무의 범위를 넘어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대법원 1992. 2. 25. 판결 91도3176)
- 선거운동기간 전에 여러 사람이 모인 집회에서 입후보예정자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당부하였다면, 이는 그 집회의 본래 목적이 무엇이나에 상관없이 선거법이 정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대구고등법원 1992. 10. 24. 판결 92노533)

2. 단체의 국외 선거운동

▣ 단체의 국외 선거운동 금지 (법 §218의14⑦)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단체의 대표자나 임직원 등(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를 말함)이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를 표명하지 않으면서 개인자격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발송할 수 있고,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도 할 수 있음.

Yes 할 수 있는 사례

- 1) 특정 정당·후보자와 관련없이 순수하게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재외선거권자에게 보내는 행위
- 2)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불특정 다수의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투표참여 캠페인을 실시하는 행위
- 3) 단체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특정 선거공약을 채택·철회하여 줄 것을 해당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게 건의·요구하는 행위

No 할 수 없는 사례

1) 단체 명의의 인쇄물 · 시설물 배부 · 게시 (법 §90, §93)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선전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후보자 추대 명목으로 서명 · 날인받는 행위 (법 §107)

단체 등이 특정인을 재외국민 후보 추대 명목으로 재외국민으로부터 지지 · 서명을 받는 행위

3) 단체 대표자의 회원대상 선거운동 (법 §218의14㉞)

향우회 · 동창회, 정당의 후원조직 및 종교 · 친목 등 교민단체의 대표자가 단체 또는 대표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3. 단체의 공명선거 추진활동

공명선거 추진활동이란?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 선거부정 감시, 투표참여 홍보 및 캠페인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음.
-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항상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입후보 예정자 포함)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함

▣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 (법 §10)

-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 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 ▶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식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 ▶ 후보자, 후보자의 가족이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단체
- ▶ 후원회, 팬클럽 등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
- ▶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

후보자의 가족 범위

- 후보자의 배우자
- 후보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No 할 수 없는 사례

- ▶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라도 아래의 행위는 할 수 없음
- 1)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칭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사진·성명 등이 표시된 광고물을 부착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
 - 2)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 포함)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 대한 지지·반대하는 내용이 게재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 3)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 대한 지지호소·반대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
 - 4) 특정 계층이나 출신지역 등으로 재외국민을 선별하여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행위



4. 선거 관련 기부행위

가. 기부행위 개념 (법 §112)

기부행위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함.

※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재외국민에게도 선거권이 있어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 한인회 등이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는 경우 기부행위 제한규정에 위반됨.

기부행위 제한 취지

기부행위가 매수행위와 결부되어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나. 기부행위 제한기간 : 상 시(언제든지)

다. 기부행위 주체별 제한내용

주 체 별	제 한 기 간	제 한 내 용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같음)와 그 배우자 (법 §113)	상 시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포함) 금지
정당(당원협의회·창당준비위원회 포함), 정당 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가족 등 (법 §114)	선거기간 전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한 기부행위 금지
	선거기간 중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제3자(누구든지) (법 §115)	상 시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한 기부행위 금지

◆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가족 등』이라 함은

-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직계비속(자녀·손자 등)과 형제자매
-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그 임원·직원 등을 말함.

라. 기부행위 위반자에 대한 처벌 (법 §257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기부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 기부행위는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도 모두 처벌됩니다.
- 따라서, 누구든지 국회의원·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그 배우자, 정당,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가족 등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하거나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 기부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한 자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을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3,000만원 상한) 과태료 부과 (법 §261⑨)

Yes 할 수 있는 사례

- 1) 정당의 당직자,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각종 재외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 2)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제공 포함)하는 행위



No 할 수 없는 사례

- 1) 연말·연시에 금품 등 제공 (법 §115)

한인회 대표자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위하여 재외국민에게 선물 또는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2) 고국방문 또는 해외여행 등 선심관광 제공 (법 §115)

한인회 대표자 등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위하여 한인회 회원 등에게 고국방문 또는 해외여행 명목으로 선심관광을 제공하는 행위

3) 행사에 찬조금 제공 또는 요구 (법 §113, 114)

정당의 당직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등이 한인회 주최 간담회·체육대회 등에 찬조금을 제공하거나, 행사 관계자가 정당의 당직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게 찬조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교통편의 제공 등 (법 §230)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 대한 투표를 부탁하면서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자 또는 재외선거권자에게 교통편의 제공 또는 교통비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5) 기자회견 참석자에 대한 금품 등 제공 (법 §113 내지 법 §115)

정당의 당직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기자·재외국민에게 교통편의 또는 금품·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참석한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

6) 외국을 방문한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을 제공받는 행위 (법 §257)

기부행위 관련 판례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에게 콘도의 객실 및 연회장의 이용요금을 할인 또는 면제해 준 것은 그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기부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09. 7. 23. 판결 2009도1880)



5.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 취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에 개입할 경우 일반 유권자보다 선거의 결과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임.

▣ 금지대상 공무원 등 (법 §86①)

- ▶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은 제외)
- ▶ 공공기관(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 지방공기업의 상근 임·직원
- ▶ 한국자유총연맹·새마을운동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의 시·도 및 구·시·군 조직의 대표자
- ▶ 선상 투표 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등

No 할 수 없는 사례

- 1) 소속직원 또는 재외국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법 §86①)
-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법 §86①)
 -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득표 및 선거전략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3)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법 §86①)
- 4)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 대한 지지·반대 행위 (법 §60①)
 - ▶ 재외국민이 참여하는 회의 등을 주재하는 자리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하여 지지·반대를 유도하는 행위
 - ▶ 재외국민 의견수렴 등을 명목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반대를 호소하는 행위



6.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행위

No 할 수 없는 사례

1)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법 §85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른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법 §85②)

공무원이 소속직원이나 공공기관·공기업,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법인·단체·기업 등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3) 특수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법 §85③④)

- ▶ 한인학교 교사가 수업시간 등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 대한 지지·반대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 종교집회를 주관·개최하거나 진행하면서 재외국민인 소속 신도에게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 대한 지지·반대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 기업체의 간부가 재외국민인 소속 직원에게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 대한 지지·반대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공무원의 재외선거사무 간섭금지 (법 §242의2)

- 공무원이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공무원에게 재외선거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7. 시설물·인쇄물 설치·배부

시설물·인쇄물 이용 선거운동 제한 취지

기회균등 보장의 원칙에 입각하여 선거운동의 부당한 경쟁 및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막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Yes 할 수 있는 사례

- 1)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등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재외국민에게 전화, e-mail, 연하장 등을 통하여 의례적인 인사를 하는 행위
- 2) 행사 주최자가 정책간담회 개최장소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제한된 인사에게 개최 일정을 알리는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

No 할 수 없는 사례

- 1) 표찰·수기·마스코트 등 이용 선전 (법 §68)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이 게재된 어깨띠·옷·표찰·수기·마스코트·피켓·소품·그 밖의 표시물 등을 지니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2) 선전인쇄물 배부 등 (법 §90, §93)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시설물을 설치·광고하는 행위
- 3) 경력 등을 게재한 연하장 발송 (법 §93, §254)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연하장을 발송하거나, 연하장에 활동상황·경력 등을 게재하여 발송하는 행위
- 4) 친교가 없는 자에게 인사장 등 우송 (법 §93, §254)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한 인사장이나 인쇄물을 우편 발송하는 행위
- 5) 선거공약을 게재한 초청장·안내장 발송 (법 §93, §254)
재외동포 간담회 등의 개최를 안내하는 초청장·안내장·팸플릿 등에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선전하는 내용이나 선거공약 등을 게재하여 발송하는 행위
- 6) 한인회 등의 회보·소식지 이용 선전 (법 §93, §254)
한인회 등이 발행하는 회보·소식지에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

8. 모임·집회 개최

No 할 수 없는 사례

1) 한인회 모임에서 지지호소 (법 §254)

한인회 모임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 정당을 지지·선전하거나 또는 특정인의 입후보 예정 사실을 알리면서 그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전하는 행위

2) 향우회·동창회 등 집회 개최 (법 §103)

선거기간 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아우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3) 세미나·학술대회 등 집회이용 선전 (법 §254)

세미나·학술대회 등 행사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 대한 지지·반대를 호소하는 행위

4)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 개최 (법 §103)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2016. 1. 14.~4. 13.)까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행위

5) 재외동포간담회 등 이용 선전 (법 §103, §254)

재외동포간담회에 참석한 재외국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 대한 지지·반대를 호소하는 행위

6) 자동차·확성장치 이용 선거운동 (법 §90, §91, §93)

자동차 또는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반대하는 연설을 하거나, 지지·반대하는 내용이 게재된 인쇄물·시설물을 첨부·설치하는 행위



9. 정당활동

Yes 할 수 있는 사례

- 1) 국외에 있는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당원모임을 구성하는 행위
- 2)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활동(호별방문 제외)하는 행위
- 3) 정당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 등을 개최하면서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설명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행위

No 할 수 없는 사례

- 1) 국외에 정당의 별도 지부 등 설치 (정당법 §3, §37③)

정당이 국외에 별도 지부 또는 당원협의회를 설치하거나 하부조직 운영을 위하여 사무소를 두는 행위

※ 국외에 있는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당원모임을 구성하는 것은 무방하나, 그 모임의 명칭을 “당원협의회”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선거운동을 하여서도 아니 됨.
- 2) 선거기간 중 입당원서 배부 등 (법 §144①)

정당이 선거기간 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하는 행위
- 3)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의 정당 활동 (정당법 §22②)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대한민국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4) 정당간부 명함 이용 선전 (법 §93, §254)

정당 당직자가 자신의 명함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직책·성명 등을 함께 게재하여 재외국민과 인사 시 교부하는 행위
- 5) 공천안내 등 인쇄물 발송 (법 §93, §254)

입후보예정자의 입당·탈당 또는 후보공천 사실 등을 게재한 인쇄물을 재외국민에게 발송·배부하는 행위
- 6) 집회·모임에서 정당 당직자가 지지호소 (법 §254)

정당 당직자가 한인회 모임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 대한 지지·반대를 호소하는 행위
- 7) 정당의 정책홍보물 배부 (법 §93)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당의 정책홍보물을 배부·발송하는 행위
- 8) 정책간담회 참석자에게 교통편의 등 제공 (법 §113 내지 §115)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일반 참석자들에게 교통편의나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10. 사조직·팬클럽 활동

Yes 할 수 있는 사례

- 1) 선거와 무관하게 친목 도모나 학술·취미 활동 등을 위하여 팬클럽을 결성하고 통상의 활동·운영을 위한 내부 조직을 두는 행위
- 2)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팬클럽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당 입후보예정자의 연설내용이나 활동상황·동정 등(지지·선전내용은 불가)을 게시하는 행위
- 3) 팬클럽 회원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없이 피켓·인쇄물을 활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No 할 수 없는 사례

- 1) 정치인 팬클럽 설립·활동 (법 §87)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선거에 이용하기 위하여 “○○○을 사랑 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을 불문하고 팬클럽을 결성하는 행위
- 2) 팬클럽 회원에게 연설내용 등 송부 (법 §87, §254)

팬클럽 명의 또는 팬클럽 대표자의 명의로 정치인의 연설내용이나 활동상황·동정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행위
- 3) 팬클럽 내부에 선거운동 기구 설치 (법 §87, §89)

팬클럽 내부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및 그의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선거기획팀, 온라인 홍보팀, 정책 홍보팀 등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을 설치하는 행위
- 4) 팬클럽 회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출정식 개최 (법 §87, §89, §254)

팬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 지원이나 선거에서의 승리 등을 결의하기 위하여 출정식·전진대회 등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 5)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등 설치 (법 §87, §89)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향우회·동창회·정당의 외곽단체 등 사조직이나 유사 기관을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 6) 한인회·향우회 등 사무실을 선거운동 장소로 사용 (법 §87, §89)

한인회·향우회 등 사무실에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휘하고 선거운동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7) 후보자의 선거자금 모금 등을 위한 조직 설치 (법 §87, §89)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자금 모금이나 선거기획 또는 선거공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을 설치하는 행위

8) 기관지·회보 등 이용 선전행위 (법 §93, §254)

기관지·회보 등 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선전물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여 재외국민에게 선전하는 행위

※ ○○지역교민발전연구소 등의 개설을 알리면서 후보자의 직명 또는 성명 등을 게재한 선전물 등을 첨부·게시 또는 배포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11. 재외투표

No 할 수 없는 사례

1) 재외투표소 부근에서 지지호소 (법 §166)

재외투표소 입구에서 투표하러 온 재외선거인에게 인사를 하면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부탁하는 행위

2) 투표지 촬영 및 공개 (법 §166의2, §167)

재외투표소 기표소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된 투표지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



12. 사이버 이용

Yes 할 수 있는 사례

1) 인터넷 이용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2)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3) 전자우편 이용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No 할 수 없는 사례

1)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법 §60)

미성년자(19세 미만인 자), 대한민국 공무원, 외국 시민권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행위

2) 허위사실 공표 또는 비방행위 (법 §250, §251)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그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유포하는 행위

사이버 관련 판례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통신망의 공개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면 선거법 제251조가 정하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됨. (대법원 2001. 11. 9. 판결 2001도4695)

13. 전화 이용

Yes 할 수 있는 사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No 할 수 없는 사례

1) 재외선거권자들과의 동시통화 (법 §109, §254)

컴퓨터의 도움을 얻어 재외선거권자들과 동시통화를 하거나 동시 토론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입후보예정자 포함)에 대한 지지·반대를 호소하는 행위

2) 선거운동 대가 제공 (법 §135)

후보자 측근이 선거법상 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닌 재외국민으로 하여금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전화운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3) 선거운동기간 전 전화이용 선거운동 (법 §254)

예비후보자가 아닌 재외국민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전화를 이용하여 재외선거권자에게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호소하는 행위

4) 야간 전화이용 선거운동 (법 §109)

선거운동기간 중이라도 현지시각으로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14.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No 할 수 없는 사례

1) 선거일전 6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법 §108)

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2016. 4. 7. ~ 4. 13. 18:00)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 인기투표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하는 행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시 금지사항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 오락이나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2)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법 §108)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3) 기타 여론조사 이용 선전행위 (법 §108, § 254)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리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4) 허위여론조사 공표 (법 §96)

-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보도하는 행위
- ▶ 여론조사 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

5) 재외투표소 출구조사 (법 § 218의17)

재외선거에서 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송국·일간신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재외투표 기간에 재외투표소에서 출구조사를 하는 행위

여론조사 관련 판례

- 실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설문조사 결과를 만든 후, 언론사 관계자에게 부탁하여 보도를 하게 함으로써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보도를 하게 한 것은 법에 위반됨. (전주지방법원 2002. 8. 30. 판결 2002고합941)

15. 방송·신문 이용

No 할 수 없는 사례

1) 후보자의 성명·사진 등 광고 (법 §93, §254)

한인방송·한인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의 성명·사진·경력·정견 등을 광고하는 행위

2)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광고출연 (법 §93)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하는 행위 및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3) 한인신문 창간 축하광고 (법 §93, §254)

한인신문의 창간 축하 명목으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사진·경력 등을 광고하는 행위

4) 신문 등의 통상적 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 등 (법 §95)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 대한 호의 또는 악의적인 기사가 게재된 한인신문·기관지 등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첨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첨부하는 행위



통상방법외의 방법이란?

‘통상방법외의 방법’이란 간행물의 발행목적 및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종전에 실시되던 방법과 범위를 일탈하여 간행물을 선거홍보물화 하는 이례적인 방법을 말함.

5) 허위논평· 보도행위 (법 §96)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하는 행위

6) 방송·신문의 불법이용 행위 (법 §97)

- 선거운동을 위하여 언론사 관계자에게 금품·기타의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
-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언론사 관계자에게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하여 금품·향응·기타 이익의 제공·약속하는 행위
- 언론사 관계자가 후보자, 후보자의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선거사무관계자로부터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하여 금품·향응·기타 이익을 받거나 권유·요구·약속하는 행위



7) 방송시설을 이용한 선거운동 (법 § 98)

한인방송 시설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언론사 관계자 및 선거사무 관계자 등

- 언론사 관계자 :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
- 선거 사무 관계자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 후보자의 가족 : 21p 참조



16. 호별방문

호별방문 제한 취지

일반 공중의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서의 대화가 의리나 인정 등에 치우쳐 선거인의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비공개적인 장소에서의 만남을 통하여 매수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며,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예기치 않은 방문을 받게 되어 사생활의 평온이 침해될 우려 등이 예상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No 할 수 없는 사례

1)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하는 행위

2)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하는 행위

- ※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관혼상제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말(언어)로 호소하는 것은 가능

호별방문 관련 판례

-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고, 반드시 그 거택 등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방문한 세대수가 3세대에 불과하거나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한 채 대문 밖에 서서 인사를 한 경우에도 호별방문죄에 해당됨. (대법원 2000. 2. 25. 판결 99도4330)



17. 정치자금 모금·기부

정치자금이란?

‘정치자금’이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이나 공직선거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등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 또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 정치자금의 종류는 당비·후원금·기탁금·보조금 등이 있음.

- 당 비 :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당의 당원이 대한민국 소속 정당에 부담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
- 후원금 :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

Yes 할 수 있는 사례

- 1)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정치자금법에서 허용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
- 2) 재외국민 또는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가 정치자금법상 허용되는 방법으로 후원금을 후원회에 제공하는 행위

No 할 수 없는 사례

- 1)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은 정치자금 조달 (정치자금법 §2, §45)

정치자금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행위

※ 재외국민은 정치자금법 제6조에 의한 후원회지정권자가 아니므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없음.
- 2) 단체와 외국인의 정치자금 기부 (정치자금법 §31)
 - 가) 단체의 선거지원금 제공

특정 단체(향우회·동창회 등)가 소속 회원인 정치인에게 선거지원금을 제공하는 행위
 - 나) 단체의 기금으로 정치자금 제공

단체의 기금을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
 - 다)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모금·기부

법인 또는 단체가 재외국민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모금하여 특정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행위

라) 외국 소재 한국 기업체의 정치자금 기부

외국 소재 한국 기업체가 대한민국의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등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

마)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체의 정치자금 기부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체가 대한민국의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등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

3) 불법 정치자금 모금 또는 기부

가) 집회에 의한 정치자금 모금 (정치자금법 §14)

재외동포간담회·정책간담회·기자회견·향우회, 한인회 행사 등 각종 집회를 이용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행위

나) 재외국민의 후원금 모금·기부 (정치자금법 §2, §45)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로부터 후원금 모금 위임을 받지 아니한 재외국민이 후원금을 모금하거나 기부하는 행위

다) 정당의 소속 당원이 아닌 자의 당비 납부

정당의 소속 당원이 아닌 자나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외국 시민권자가 정당에 당비를 납부하는 행위

4) 정치자금 기부의 알선행위 (정치자금법 § 45)

회사 임원이 특정 정치인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납부하도록 직원들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하는 행위

정치자금 후원방법

정치자금은 대한민국 정치자금법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부하여야 함.

- 누구든지 타인의 명이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 1회 10만원, 연간 12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 예금계좌 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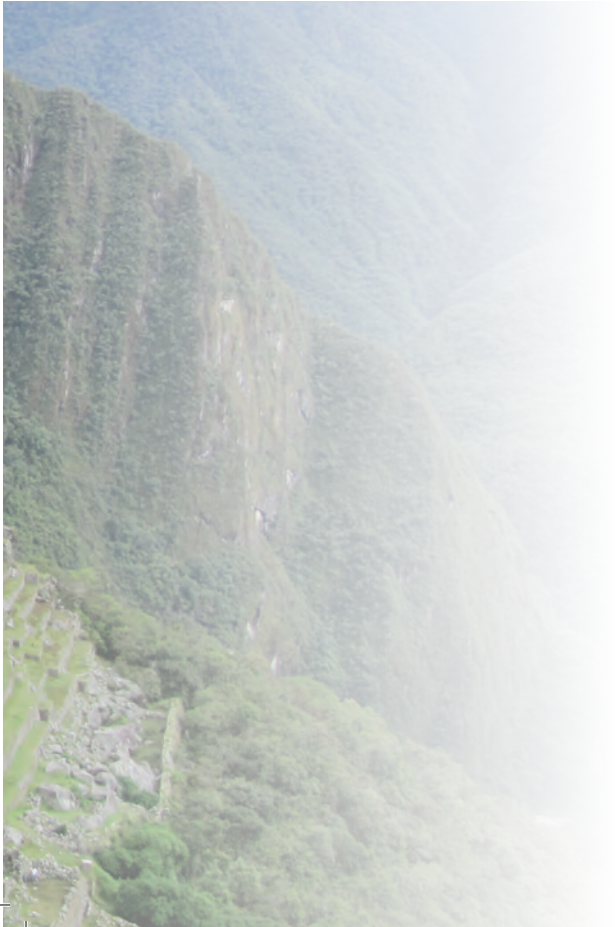
Appendix





부록

1. 재외선거제도 안내
2. 정당·후보자에 관한 정보 제공
 - ▶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주요 사무일정



1. 재외선거제도 안내

가. 재외선거 주요일정

재외선거제도의 도입으로 외국에 일시 체류하는 국민뿐만 아니라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재외선거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음.

선거사무일정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국외부재자 신고	재외투표 (6일 중 정하는 기간)	선거일 (개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2015. 11. 15. ~ 2016. 2. 13.)		2016. 3. 30. ~ 4. 4.	2016. 4. 13.

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 신고 등

국외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국외부재자 신고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구 분	참여방법	신청 · 신고서류 및 방법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사람	국외부재자 신고	국외부재자 신고서 ▶ 관할 구 · 시 · 군의 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 신고도 하지 않은 사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등록신청 방법】 1)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 신청 2)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에 근무하는 직원에 서면 신청 ※ 1), 2)의 신청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 배우자의 직계존 · 비속을 말함)의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서를 대리 제출할 수 있음. 3) 우편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 3)의 신청의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

2. 정당·후보자에 관한 정보 제공

가.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작성·제공 (법 §218의14④)

- 1) 제 공 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 대상선거 :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 3) 방 법
 - 공관 게시판 게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외교부 및 각 공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전자우편 전송(수신을 원하는 재외선거인과 국외 부재자 신고인에 한함)
 - ▶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시 e-mail을 기재한 사람에 한함.

나. 방송시설 관리·운영자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및 정책토론회 중계방송

1)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중계방송 (법 §82의2①, §218의14⑤)

방송시설을 관리 또는 운영하는 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선거운동기간 중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제외) 중에서 지정하는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2회 이상 개최하는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 할 수 있음.

2)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중계방송 (법 §82의3①, §218의14⑥)

방송시설을 관리 또는 운영하는 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2016. 1. 14. ~ 3. 23.) 까지 법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정책토론회를 중계방송 할 수 있음.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주요 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준일	관계법조
'15. 10. 16부터 '16. 5. 13까지	금 금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국회의원선거일전 180일부터 국회의원선거일후 30일까지	법§218① 규§136의2
'15. 11. 15부터 '16. 2. 13까지	일 토	국외부재자 신고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법§218의4, 5, 6 규§136의4, 5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송부	공관명부 등 작성 즉시	법§218의7 규§136의6
'16. 2. 24부터 '16. 3. 4까지	수 금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법§218의8, 9 규§136의8, 9
3. 5부터 3. 9까지	토 수	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 및 이의신청 (불복신청은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선거일전 39일부터 35일까지	법§218의10, 11
3. 10부터 3. 13까지	목 일	재외선거인명부등 명부 누락자 등재신청	선거일전 34일부터 31일까지	법§218의11③ 규§136의10②
3. 14	월	재외선거인명부등 확정	선거일전 30일	법§218의13①
3. 24까지	목	재외투표소의 명칭·소재지와 운영기간 등 공고	선거일전 20일까지	법§218의17③④
3. 22부터 3. 26까지	화 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 이내	법§37, 규§10



시행일정	요일	실시 사항	기준 일	관계법조
3. 24부터 3. 25까지	목 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오후6시)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원고 제출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법§218의14④ 규§136의13
3. 27까지	일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인 신고	선거일전 17일까지	법§218의20②
3. 30부터 4. 4까지	수 월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법§218의17① 규§136의15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8시~오후5시)		
		재외투표 등 회송	재외투표기간 만료일후 지체없이	법§218의21② 규§136의23
4. 8부터 4. 9까지	금 토	사전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6시~오후6시)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4. 13	수	투 표 (오전6시~오후6시)	선 거 일	법제10장
		개 표 (투표종료 후 즉시)		법제11장
		공관 개표(사유 발생시)	중앙위원회가 정한 일시	법§218의24 규§136의25



재외선거 위반사례예시집

Cases on Illegal Activities of Overseas Election

- ▣ 발 행 : 2015년 11월
- ▣ 발행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흥촌말로 44
Tel. (02)503-1114(代)